재정지원통합관리위원회 운영규정(안)

제정 2025. 06. 23.

제1조(목적)

이 규정은 각종 정부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통합점검을 통해 사업간 세부사업 중복 추진을 예방함으로써 사업별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

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① 신규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에 관한 사항

② 재정지원사업별 프로그램의 중복성 검토에 관한 사항

③ 사업별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한 역할 분담 및 협업에 관한 사항

④ 기타 재정지원사업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

제3조(구성)

① 위원회는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교무처장, 기획처장, 총무처장,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,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은 총장이 위촉한다.

② 위원장은 총장으로 한다.

제4조(임기)

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② 위원이 궐위 된 경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5조 (위원장 등의 직무)

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.

제6조 (회의)

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대학 내 행정조직 및 그 밖의 기관의 책임자를 위원회에 배석 시킬 수 있다.

제7조 (간사)

위원회의 사무처리와 운영을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1명을 둔다.

제8조 (회의록의 작성)

위원회는 회의의 일시, 장소, 발언요지, 결정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·보존하여야 한다.

제9조 (운영세칙)

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.

부 칙(2025. 06. 23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5년 06월 23일부터 시행한다.